

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개정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3. 6. .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개정구분 : 부분개정

개정이유 및 내용

-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적립기금 이자수익 감소로 인한 기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의 8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개정하여 원활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- 국제안목 배양을 위하여 국내외 농업인간의 연수 및 교류사업 추진

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 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이의사항 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'03. 6. 5. ~ 6. 25.

기타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중 “연수사업”을 “연수 및 교류사업”으로 한다.

제12조중 “운용수익금의 80퍼센트 이내로”를 “수익금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농업기술센터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농업진흥과장 유 상 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인력육성담당 정 중 화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정 중 화 (2611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10조 (지원사업 대상) ①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</p> <p>2. 선진 해외농업 <u>연수사업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	<p>제10조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<u>연수 및 교류사업</u>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(사업비의 지원) 사업비 지원은 육성기금의 <u>운용수익금의 80퍼센트 이내로</u> 하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,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p>1 ~ 6 (생략)</p>	<p>제12조 ----- ----- <u>수익금으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 ~ 6 (현행과 같음)</p>